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건명: 지유리 소유물건
(2025타경64351)

의뢰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법보좌관 유창우(경매4계)

감정평가서번호: RM-251001-2-01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라움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

(부동산)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 정 평 가 사 (인)
김 주 용

감정평가액	이억원정 (₩200,000,000.-)					
의뢰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법보좌관 유창우	감정평가 목 적	법원경매			
제출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경매4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지유리 (2025타경64351)	감정평가 조 건	-			
목록표시 근 거	귀 제시목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기준시점	조 사 기 간	작 성 일		
기 타 참고사항	-	2025. 10. 13	2025. 10. 13	2025. 10. 15		
감 정 평 가 내 용	공부(公簿)(의뢰)		사 정		감 정 평 가 액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단 가	금 액
	구분건물	1개호 이	구분건물	1개호 하 여	-	200,000,000
	합 계				백	₩200,00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 목적

- 본 감정평가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소재 「고양예술고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711-11 통칭 "세진하이츠빌 101" 제2층 제202호(이하 "대상물건" 이라 함)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경매목적 감정평가임

2. 대상물건 개요

소재지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711-11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장자길82번지 60-7)							
건물명 동·층·호수	통칭 "세진하이츠빌 101" 제2층 제202호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최고층	사용승인일자
							4층	2018.06.01
구분		면적(m ²)			전용률 (%)	대지권 면적 (m ²)	용도	
기호	층 /호수	전유	공용	분양			공부	현황
1	제2층 /제202호	46.6700	29.8360	76.5060	61.00	56.1250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

3. 기준시점 및 실지조사

1)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사유

- 본 감정평가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하여 대상물건의 가격조사 완료일자인 「2025년 10월 13일」임

2)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 본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2025년 10월 13일 실지조사를 하여 대상물건을 확인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4. 기준가치

1) 개요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대상물건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 함
- i)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ii)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iii)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음

2) 기준가치 결정 및 그 이유

- 본 감정평가는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였음

5. 의뢰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조건에 대한 검토

1) 개요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점 기준 대상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 이용, 일시적인 이용을 제외한다)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함
- i)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ii)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iii)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의 가치형성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 할 수 있음

2) 의뢰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조건에 대한 검토

- 별도 감정평가조건 없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6. 감정평가방법

1) 감정평가 근거 및 기준

- 본 감정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 및 감정평가 이론에 의하여 감정평가 함

2) 일괄감정평가 원칙

- 본 감정평가의 대상물건은 구분건물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2항 및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토지의 소유권 대지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 함

3) 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 할 때에는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를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비교 등 비교하여 가액을 산정하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적절한 다른 방법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 함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이 일체로 거래되는 대상물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원가법은 합리적 원가 배분의 어려움이 있어 적용 부적합 하며,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인 대상물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수익을 추정하여 현재가치로 환원 또는 할인하는 수익환원법은 적용 부적합 한 것으로 판단됨
- 다른 방법을 적용 하여 합리성을 검토하기 어려우므로 비교방식의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기준으로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7. 그 밖의 사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일체성으로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을 구분하여 감정평가하는 것은 부적합 함. 다만, 귀 법원의 요청에 의하여 대상물건의 감정평가 가액을 건물 및 토지의 배분가액으로 부동산 감정평가명세표에 표시하였음
- 대상물건 실지조사시 이해관계인의 폐문 및 부재로 인하여 내부구조 및 이용상태 등은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및 표준적 이용상황, 유사건물 탐문조사 등을 참조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1. 비교사례 선정

-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고, 비교적 최근에 거래된 「거래사례 A」를 선정함

구분	소재지	건물명 /동	층 /호수	전유면적 (㎡)	거래가액 (원)	거래단가 (원/㎡)	거래시점
							사용승인일
A	덕○동 739	다○빌○지 /제○동	제○층 /제○02호	49.27	208,000,000	4,221,636	2025.03.26
							2017.11.24
B	덕○동 707-08	다○타○ /제○동	제○층 /제○01호	51.38	210,000,000	4,087,193	2024.03.06
							2016.02.15

※ 출처 : 감정평가정보체계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2. 사정보정

- 사정보정 : 1.000
-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판단됨

3. 시점수정

1) 연립다세대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지역 : 경기 경의권)

2025.08(대상)	2025.02(사례)	변동률(%)	비 고
99.50	100.08	0.99420	99.50 / 100.08

※ 출처 : 한국부동산원(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2) 시점수정

- 시점수정 : 0.99420
- 일반적으로 구분건물의 경우 용도에 따라 각 용도의 특성에 맞는 시점수정치를 적용하며, 대상물건은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서 대상물건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연립다세대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을 시점수정치로 결정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4. 가치형성요인비교

1) 가치형성요인 비교항목

요인구분	세부항목
단지외부 요인	대중교통의 편의성, 교육시설 등의 배치, 도심지 및 상업, 업무시설과의 접근성, 차량이용의 편리성,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과의 배치, 자연환경(조망, 풍치, 경관 등) 등
단지내부 요인	시공업체의 브랜드, 단지 내 총세대수 및 최고층수,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경과연수에 따른 노후도, 단지 내 면적구성(대형, 중형, 소형), 단지내 통로 구조(복도식/계단식) 등
호별요인	층별 효용, 향별 효용, 위치별 효용(동별 및 라인별),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사용권의 크기, 내부 평면방식(베이), 간선도로 및 철도 등에 의한 소음 등
기타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 가치형성요인 비교치

구분		단지 외부요인	단지 내부요인	호별요인	기타요인	가치형성요인 비교치
기호	층 /호수					
1	제2층 /제202호	1.00	1.02	1.00	1.00	1.020

의 견

단지 외부요인	대상물건은 거래사례A 대비 단지외부요인 대등함
단지 내부요인	대상물건은 거래사례A 대비 경과연수에 따른 노후도 등 단지내부요인 우세함
호별요인	대상물건은 거래사례A 대비 호별요인 대등함
기타요인	대상물건은 거래사례A 대비 기타요인 대등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5.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기호	구분 층/호수	비교사례 거래단가 (원/㎡)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형성 요인비교	산출 단가 (원/㎡)	대상물건 전유면적 (㎡)	산출가액 (원)	시산가액 (원)
1	제2층 /제202호	4,221,636	1.000	0.99420	1.020	4,281,094	46.670	199,798,657	200,000,000

Ⅲ. 참고가격 자료

1. 시세수준

구분	시세수준
대상물건 유사 부동산	전유면적 기준 약 4,000,000 ~ 4,500,000원/㎡ 내외 수준

2. 인근 유사 부동산 감정평가전례

구분	소재지	건물명 /동	층 /호수	전유면적 (㎡)	감정평가액 (원)	전유면적기준 단가(원/㎡)	감정평가목적
							기준시점
가	덕○동 707-01	에○클○스 /제100동	제○층 /제○02호	55.38	225,000,000	4,062,839	법원경매
							2024.07.25
나	덕○동 701-01	통칭 "세○하○츠○ 100"	제○층 /제○01호	46.67	193,000,000	4,135,419	법원경매
							2023.04.05

※ 출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정보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V. 감정평가액 결정의견

1. 감정평가액 결정

기호	구분	전유면적기준 결정단가 (원/㎡)	전유면적 (㎡)	산출가액 (원)	감정평가액 (원)
	층 /호수				
1	제2층 /제202호	4,281,094	46.670	199,798,657	200,000,000

2. 시산가액의 검토

-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상기 시세수준 및 인근 유사 부동산 감정평가전례 참고가격 자료 및 감정평가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부동산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정평가액	비 고
					공 부	사 정		
1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711-11 덕이동 711-1 공동주택	공동주택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1층, 지상4층				
	[도로명주소]			지1층	164.7			
	경기도			1층	111.84			
	고양시			2층	111.84			
	일산서구			3층	111.84			
	장자길82번길 60-7			4층	111.84			
				옥탑1층 (연면적제외)	12.15			
	1)경기도	711-11	대	계획관리지역	449			
	고양시			(내)				
	일산서구 덕이동			철근콘크리트구조 제2층 제202호	46.67	46.67	200,000,000	비준가액, 공용부분 포함
			1)소유권대지권	56.125				
				-----	56.125			
				449				
								토지·건물 토 지 : 80,000,000 건 물 : 120,000,000
합 계							₩200,000,000.-	
			이	하	여	백		

부동산 감정평가요항표

-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소재 「고양예술고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 정류장이 위치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4층 건물 제2층 제202호 임
 외벽 : 파벽돌 마감 등
 내벽 : 폐문부재로 인하여 미확인
 창호 : 새시 창호 등

(4) 이용상태

집합건축물대장 기준 「다세대주택」 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전기설비, 난방설비 등 되어 있음

부동산 감정평가요항표

-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대상물건이 소재하는 토지는 인접지 대비 등고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대상물건 소재 토지 서측으로 노폭 약 6m 내외 타인소유의 포장도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zone)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일부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 제한거리 500m (소,젓소,말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전부제한구역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고도 16m 위임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등대상,대상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로사용되는토지)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임대관계 등 미상임

광역위치도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711-11 덕이동711-1 공동주택 제2층 제202호
-----	---



위 치 도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711-11 덕이동711-1 공동주택 제2층 제202호
-----	---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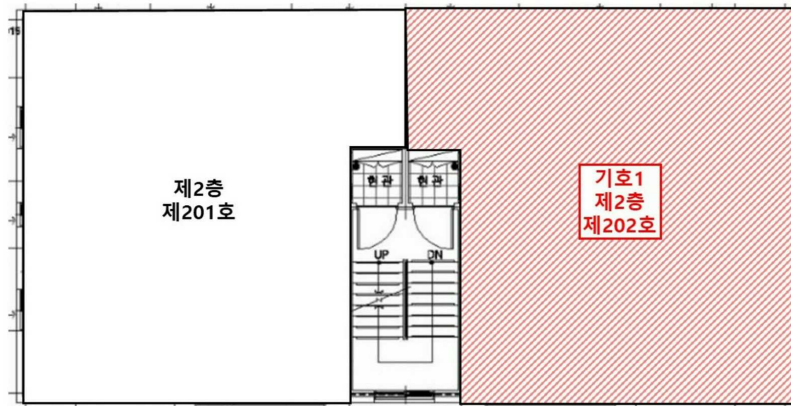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711-11 덕이동711-1 공동주택 제2층 제202호



[Non Scale]

호별배치도



내부구조도

